

**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**  
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06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유용원 · 이현승 · 김재섭  
강승규 · 김성원 · 조승환  
백종헌 · 김미애 · 최형두  
나경원 · 김소희 · 김 건  
강선영 · 안철수 · 윤영석  
의원(15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를 즉시 신고하거나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.

또한, 성폭력범죄로 인한 ‘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’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,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

려가 제기됨.

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 
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  
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  
을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).

##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⑤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3조(장애보상금) ① ~ ④ (생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| 제33조(장애보상금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br><u>⑤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.</u> |
| <u>⑤</u>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<u>⑥</u> ----- 제5항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